

‘정가판매’ 조항 신설, ‘온라인 1할 할인’ 삭제

issue*

완전 도서정가제 담은 <출판및인쇄진흥법>개정안 의견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관련 업계 제시

‘정가판매’ 조항을 명문화하고 할인 단서조항을 없애는 등 완전한 도서정가제를 골자로 한 서점업계 및 출판계의 <출판및인쇄진흥법>개정안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예외적 적용으로 도서정가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현행 <출판및인쇄진흥법>은 지난해 2월 시행 이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마일리지(구매실적 누진제) 규제 미비, 인터넷서점 할인판매 허용, 부칙 한시규정에 의한 연차적인 정가제 범위 축소·폐지 등을 이유로 서점업계 등에선 현행법을 ‘도서할인법’으로 표현하기까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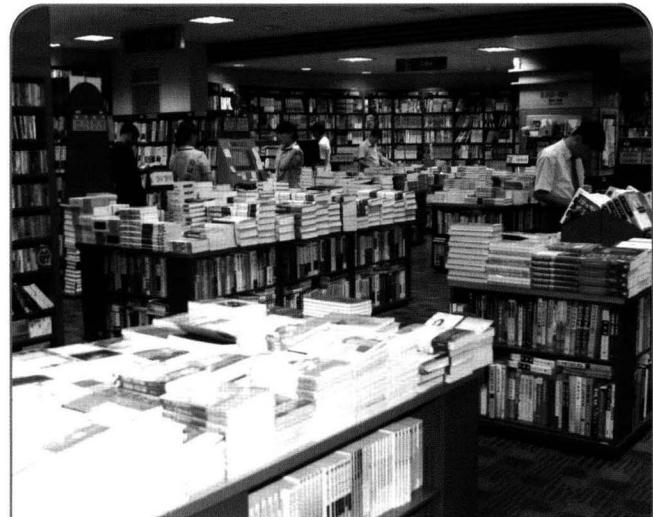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 지난달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출판계가 마련한 개정안 의견은 ‘정가판매’를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만들어진 제2조 12호는 ‘정가판매라 함은 사업자가 현금 할인은 물론, 사은품, 누적점수제, 할인쿠폰 등의 유사한 형태의 할인이 없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가판매’를 새롭게 규정했다. 유사한 할인판매 행위를 두루 규제함으로써 도서정가제에 대한 업계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 ‘정가판매’ 조항 신설…각종 유사할인행위 규제

정가판매 대상이 되는 간행물의 종류나 범위 제한도 없앴다. 종전엔 제22조 2항에서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꿔 모든 간행물을 정가판매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정가판매 ‘간행물’의 범위에 잡지도 포함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예외나 단서 조항을 대폭 없앰으로써 유사 할인행위의 틈새를 없앤 점 또한 이번 개정안 의견의 특징이다. 예컨대 제29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가의 1할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키로 한게 대표적인 경우다.

이는 현행법 규정 가운데 관련 업계로부터 가장 큰 불만을 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동 조항은 그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서점에 대해 정가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허용, 온·오프라인 판매의 경쟁력을 고려한 조항으로 여겨졌다.



완전한 도서정가제를 골자로 한 서점업계의 개정안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프라인 판매의 정가제가 편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했다는 게 서점업계 등의 주장이다. 할인의 유형에 대한 명시가 없어 법이 정한 할인율(10퍼센트 이상)과 누적점수제 할인율(10퍼센트 이상), 배송료 등을 감안하면 실제론 30퍼센트 이상의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인터넷 서점의 과다한 할인경쟁으로 인한 유통 혼란이 심화되면서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업계의 볼멘 소리다.

● 인터넷 ‘1할 이내 할인판매’ 단서 조항 삭제

또 제28조 제1항 5호에서 ‘정가 또는 정가의 1할을 초과하여’란 내용도 삭제. 모든 할인판매 행위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판매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그동안 오프라인 서점업계의 지속적인 반발을 불러온 규정을 없앤 것이다.

제22조 제3항의 예외 조항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간행물’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도서의 특성상 대부분의 도서가 1년이 넘은 재고서적으로 분류돼 할인 대상이 되는 셈”이라며 “이는 입법 목적을 퇴색시키고, 출판사의 경영 압박과 서점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출판산업 발전의 큰 걸

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냈다. 다만 기간이 경과(과월호)한 잡지 는 예외 조항에 포함시키고, 당월분은 정가판매 범위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 부칙 ‘5년 한시 규정’ 삭제…도서정가제 항구적 법제화
서점업계를 포함한 출판계 일각에선 특히 현행법 부칙의 ‘5년’ 한시 규정에 따라 2007년에 가선 도서정가제가 폐지되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일반 공산품과는 다른 문화상품으로서 특수성을 감안, 지속적인 도서정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만약 도서정가제가 폐지될 경우 처음엔 가격경쟁으로 인해 책값이 내려가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할인 예정가격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도서가격은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문 학술도서 등 비인기 도서는 서점에서 취급을 기피하게 됨에 따라 출간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신 이윤이 높은 인기 도서나 저질 도서가 범람, “독자의 폭넓은 독서 기회가 상실되고 학문과 지식 문화가 후퇴하게 된다”는 것이다. 양서나 전문 학술서 적 출간의 위축은 물론, 나아가 출판종수나 발행부수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치열한 할인경쟁을 유발, 대부분 영세서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서점의 적극적인 도서 임차가 불가능해지며, 신인 저자의 등장이나 창작의욕도 쇠퇴할 것이란 주장도 곁들였다. 나아가선 외국 거대자본의 무차별적 할인경쟁으로 국내 출판시장은 크게 잠식될 것이라고 했다.

● 연도별 서점감소현황 (단위 : 서점수)

| | |
|-------|-------|
| 1997년 | 5,407 |
| 1998년 | 4,897 |
| 1999년 | 4,595 |
| 2000년 | 3,357 |
| 2001년 | 2,646 |
| 2002년 | 2,328 |

〈제공 :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개정안 의견에선 이같은 우려에 따라 부칙 제2조의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한다’는 ‘적용시한’을 없애기로 했다. 도서정가제에 관한 제반 규정이 강행법규로서 항구적인 기속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도서정가제는 결국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출판문화산업을 보호 발전시키며, 국가·경제적으로도 유익한 필수불가결한 제도”라며 “지난 1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문제 조항들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업계에선 개정안 의견을 토대로 좀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 최종 시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

〈출판저널 편집부〉

선진 외국 예선 ?

OECD 가맹국 가운데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12개국에 달한다. 그러나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미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영어권 국가와 체코,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스웨덴 등 11개국은 이를 시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영어권 국가는 세계를 이루는 시장을 갖고 있어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체코 등 5개국은 출판문화가 비교적 후진적이란 게 연합회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등 출판선진국들은 예외없이 도서정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도서정가제와 할인제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189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온 프랑스 출판시장은 점차 할인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단체 등이 정가제를 반대, 지난 1979년 자유가격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가격경쟁이 심화, 극심한 유통혼란을 겪으면서 출판물 감소, 도서가격 상승, 서점 감소 등으로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게 됐다. 이로 인해 프랑스 문화부 기관까지 언급될 지경에 처하면서 다시 도서정가법을 제정,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독일은 우리보다 조금 앞선 지난 2002년 6월 ‘출판상품 정가법’을 제정, 같은 해 10월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미처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속출, 동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5년 개정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중이다.

현행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 경위

1999년 11월 22일 | 〈저작물의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됐으나 폐기.

2000년 6월 | 〈출판 및 인쇄진흥법〉을 문화관광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반대로 무산.

2001년 3월 21일 | 〈간행물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을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입법 청원했으나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과 통합, 수정안으로 추진됨.

2001년 11월 16일 | 〈출판 및 인쇄진흥법〉 의원 입법으로 발의.

2002년 2월 26일 | 여야 합의로 문화관광상임위원회 통과.

2002년 7월 30일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002년 7월 31일 | 국회 본회의 통과.